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5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

- 「도로법」 제76조 → 「도로법」 제91조 (안 제1조, 안 제3조)
-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제3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선납 원칙 및 예외 명확화(안 제3조제4항)

나. 인용법령 현행화 (안 제3조의2제2항)

- 「지방세기본법」 → 「지방세징수법」

다. 순화대상 용어 정비 (안 제3조제3항, 별표1)

- “구배” → “기울기”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도로법」 제91조(원인자의 부담 비용 등)
- 2) 「지방세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(사유서 첨부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6. 28. ~ 7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### [법무팀 검토의견]

관 계 법 령	「도로법」,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」 「지방세징수법」 등
법무팀 검토의견	이 조례공포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,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음.
특이사항	없음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 제76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9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76조”를 “제9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최적구배”를 “최적기울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.
- ② 구청장은 원인이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.

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표준 최적기울기 - 1 : 0.1 (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구 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 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1.2m × 1.2m	1.2m × 1.2m	1.2m × 1.2m
최소굴착폭	1.2m	1.2m	1.2m
간접손계영향구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25m 구간</li> <li>• 굴착깊이가 2.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(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.6m까지의 범위)</li> <li>• 굴착깊이가 2.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/5까지 범위 (굴착 시 파일,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.3m씩 추가 가산)</li> <li>•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구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4m구간</li> <li>•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.25㎡ (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× 1m로 계산한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. 단,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.</li> </ul>
복 구 비 용	직접	직접손계부분 복구비	직접손계부분 복구비
	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스팔트포장도로 -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(두께 5cm) 비용</li> <li>• 콘크리트포장도로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(5cm) 비용</li> <li>•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(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)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(5cm) 비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블록류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(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%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)</li> <li>• 타일류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</li> </ul>
	감독업무비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	

※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비고 : ① 보도 외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,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3. ~ 4. (생략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매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,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,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로법」 제91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91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최</p> <p>적기율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

2. 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

3.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

⑤ (생략)

제3조의2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

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

④ -----  
- ----- 천재지변이 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-----  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

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.

② 구청장은 원인이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

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를 준용한다.

[별표 1]

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표준 최적구배 - 1:0.1 (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(생략)		
최소굴착폭			
간접손케영향구간			
복구비용	직접	도로굴착 면적(복구금액)×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관리업무 요율	
	간접		
	감독 업무비		

3.~4. (생략)

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.

[별표 1]

———— 기울기 ————

1. ——— 기울기 ————

2. —————, —————, —————
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(현행과 같음)		
최소굴착폭			
간접손케영향구간			
복구비용	직접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·간접복구금액)×요율	
	간접		
	감독 업무비		

※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관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3.~4. (현행과 같음)

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, 인용법령의 현행화 및 순화 대성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, 그 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.

### 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도로과 조용철 (☎ 3153-9782)